

「2026년 영천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2차)

영천지역 신중년층 인력 취업 장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 영천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영 천 시 장
영천상공회의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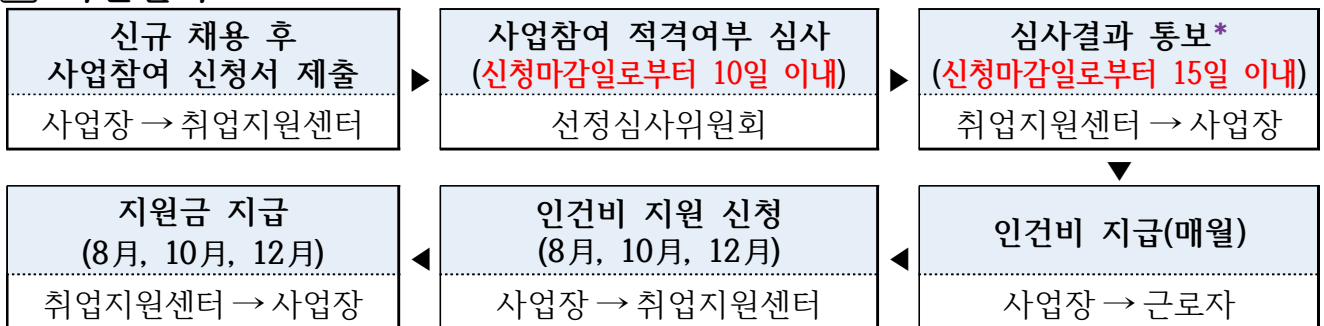
< 사업 수행기관: 영천상공회의소 산하 영천시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함) >

- (위 치) 영천시 보목2길 11(근로자복지회관 1층)
- (문 의) ☎ 054-333-0914, 메일: job01000@naver.com

I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영천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 공고기간 : '26. 5. 18.(월) ~ 6. 12.(금)
- 신청기간 : '26. 5. 26.(화) ~ 6. 12.(금)
※ 기간 종료 후 모집 미달 시 계속 접수
- 지원대상 : 신중년(40 ~ 64세) 인력을 신규 채용('26. 1. 1.이후)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6. 3. 1. ~ 12. 31.까지 [최대 10개월]
- 지원규모 : 예산잔액
- 지원내용
 - 채용 1인당 최대 월 70만원 인건비 지원(사업장별 2인까지*)
* 상시근로자 수의 50% 까지 지원(5인미만 기업일 경우 1인지원), 월 급여의 40% 이상 사업주 부담 필수
 - ※ 예산 사정 및 신청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 선정기준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예산범위 내 선정기준평가점수순으로 지원

☐ 지원대상 및 자격 【※모두충족】

<1> 사업장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라도 1건만 신청가능(1기업-1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이거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 법정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 일반직과 동일한 형태로 정하여야 함 • 최저임금('26년 기준 10,320원/시간) 이상 지급,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40시간 기준 월 기본급 2,156,880원 이상 지급 - 월 급여의 40%이상 사업체에서 부담 필수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천시 소재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1 참조) •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동 사업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여야 함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천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주 • 근로자 수,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수 기준(대표자 제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td> <td style="padding: 2px;">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td> </tr> <tr> <td style="padding: 2px;">그 밖의 업종</td> <td style="padding: 2px;">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td> </tr> </table> - 매출액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업종별 매출액(※ 붙임2)에 부합</td> </tr> <tr> <td style="padding: 2px;">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 50억원 이하, 건설업 8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td> </tr> </table>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업종별 매출액(※ 붙임2)에 부합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 50억원 이하, 건설업 8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업종별 매출액(※ 붙임2)에 부합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 50억원 이하, 건설업 8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2> 신중년 근로자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여 신청 업체에 신규 채용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기준 : 채용일 현재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 (2026. 1. 1. 채용 시) 1961. 1. 2. ~ 1986. 1. 1. 출생자 - 입사기준 : 2026. 1. 1. 이후 채용 • 사업 참여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천시인 재(사업지원 종료일까지 유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외 근로자)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영천 전입 시 지원 가능 • 채용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는 자
-----	--

제외대상

<1> 사업장

- **지원제외 업종**
 - 일반유희 주점업, 무도유희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붙임3 참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시가 판단되는 업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휴·폐업장 포함)
- **법정 사회보험 미가입 및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기존 근로자의 초임 급여보다 낮게 책정하여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사업장

<2> 신중년 근로자

- **2026. 1. 1.이전 채용되어 당해 사업장에 실제 근무 중이거나 현 채용일 기준 1년 이내 근무했었던 자를 채용하는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는 배제
 - *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 순위로 선발,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타 재정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수혜)자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본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 수령이 불가능한 자(신용불량자 등)
-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또는 사업자등록 사실이 있는 자)
 - 참여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 중일 경우 참여 불가
- 병역특례자(병역특례 채용일로부터 지원급 지급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지원대상 선정

[서류접수]

- ①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 후 접수
- ② 신청접수 후 사업장 가동 여부 및 재직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참여 근로자 직접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선정심사 보류

[평 개]

① 1차 평가(수행기관)

- 신중년고용지원사업 선정기준평가표(붙임4)의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 작성

② 2차 평가(선정심사위원회)

- 정량평가 점수와 함께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결격 사유 없을 시 선정기준평가점수가 높은 기업순으로 선정 및 지원내용 결정
-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 ①참여회차, ②지원금액, ③상시근로자가 적은 순으로 우선 선정

[선정 및 통보]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선정 결과 통지

□ 참여 근로자 관리 및 변경

- 사업장 가동 및 재직 확인을 위한 분기별 현장 방문 실시
 - 지원근로자 2회 이상 사업장 내 부재 시 지원 중지
 -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 수급의 신고 또는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 실시
- 참여 근로자 중도퇴사 등 변경사항 발생 시 7일 이내 영천시 취업지원센터에 통보
 - 사직서 및 4대보험 상실신고서 제출
 - 참여근로자 변경사항 발생 미통보시 차년도 선정시 불이익 될 수 있음
 - 참여 근로자의 중도 퇴사시 신규 채용근로자로 변경 신청 가능(1개월 이내)

□ 지원금 지급 및 환수

• 지급방법

- 업체가 인건비 선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시 사업체 계좌로 지급
- 채용일 이후 1개월 만근을 채우지 못한 중도 퇴사자는 지원금 미지급
- 현장 방문시 참여 근로자 직접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지급 보류
- 신청 및 지급시기 : 제출증빙 적격 시 10일 내 지급

구 분	사 업 기 간			
인건비 해당 월	3 ~ 5월	6 ~ 7월	8 ~ 9월	10 ~ 12월
신청/지급 시기	6월	8월	10월	12월*

* 사업 마감으로 인해 10~12월 인건비 지원금은 12월 18일(금)까지 신청

• 지원금 환수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이 법령 및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참여중단 및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내 반환규정 >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의 경우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성격·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IV

신청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6. 5. 26.(화) ~ 6. 12(금)
-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수행기관에서 평가하며, 접수기간 이후 제출된 건은 잔여예산을 고려하여 평가 후 후순위 부여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원본 제출) ※ 우편, 인터넷, 팩스 접수 불가
 - (접수처) 영천시 보목2길 11(근로자복지회관 1층), 영천시취업지원센터
 - (문의처) 영천시취업지원센터(☎ 054-333-0914~5)
-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 제출서류(순서대로 세로 좌철하여야 함, 양면인쇄 및 이면지 사용불가)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_신청서(서식)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

1	참여업체 신청서 및 업체 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사업자) 【서식1】	
2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근로자) 【서식2】	
3	지원대상 여부 참여업체 확인서 【서식3】	
4	신종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서약서 【서식4】	
5	신규채용자 근로계약서 【서식5】_자체근로계약서 양식이 없을시	
6	청렴이행서약서 【서식6】	
7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해당 확인서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등	
8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9	참여근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부표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10	외국인 등록증 사본(외국인 근로자에 한함)	
1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신청일 기준)
1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온라인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현장 발급 : 근로복지공단
13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 온라인 발급: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si4n.nhis.or.kr) ※ 현장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14	1년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채용일 기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발급	
15	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 발급처 : 정부24(인터넷 발급, plus.gov.kr), 주민센터(현장발급) ※ 세외수입 체납여부는 수행기관 및 영천시에서 자체 확인	
16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미발급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발급처 : 국세청홈택스(세무대리업체에 요청가능)(www.hometax.go.kr)	
17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1	인건비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7】
2	출근부 【서식8】_사업장 자체 출근부 없을시
3	급여명세서 및 급여지급확인 가능서류(이체확인증 등)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인건비 지원 해당 월별 발급)
5	참여근로자 주민등록 등본 1부
6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7	업체(대표) 통장사본
8	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종료후에도 해당업체에 계속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며, 신중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가입에 따른 의무부담금은 경감할 수 없음
- 대상업체는 채용한 신중년에 대하여 본 사업 이외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장려금, 지원금 등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접수결과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운영지침」,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은 영천시 및 취업지원센터에 있음
-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지원받는 경우 추후 환수될 수 있으며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정 수급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별도로 부과되니 지원 제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폼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2]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심사표

기업현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 명 (신청일 기준_고용행정통합포털)
	신중년고용지원사업 참여회차		[] 회
	신중년고용지원사업 지원금액		[] 천원
	가점/감점	여 부	[] 가점 / [] 감점
		내 용	가점 / 감점
지원 제외 사업장 여부		[] 여 / [] 부	

심사항목		배점			점수
참여 회차 (2022~2025년 참여실적)	40	0회	40		
		1회	36		
		2회	32		
		3회 이상	28		
지원 금액 (2022~2025년 지원실적)	40	500만원 미만	4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6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32		
		2000만원 이상	28		
상시 근로자수 (신청일기준_ 고용행정통합포털)	20	1명 ~ 10명 미만	20		
		10명 이상 ~ 30명 미만	18		
		30명 이상 ~ 50명 미만	16		
		50명 이상	14		
가점	1년 이상 계속 고용	10	1명	5	
			2명	10	
감점	권고사직 등 사업체 사정으로 중단	△5	1명 이상	- 5	
			사업체 준수규정 위반 (위반건별 처리) - 변경사항 보고 지연 - 지원금 신청 지연	△5	1회
	2회	- 4			
	3회 이상	- 5			
총 점					

※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 ①참여회차, ②지원금액, ③상시근로자가 적은 순으로 우선 선정
 ※ 가·감점은 2025년 참여 및 지원실적을 평가함